

다자녀할인특약

약관

다자녀할인특약 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특약은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 사이에 보험계약과 관련해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(이하 '주계약'이라 합니다)에 부가됩니다.

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제2조 (특약의 체결 및 소멸)

-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 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
- ② 주계약이 해지(解止)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
제3조 (특약의 적용 범위)

이 특약은 2011년 1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 '다자녀가구 보험료할인'[명칭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형제자매(본인포함)가 2명 이상인 경우 주계약 영업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] 제도가 부가된 상품을 가입한 계약 중 보험료 할인 신청 당시 '다자녀가구 보험료할인'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유효한 계약(이하 '대상계약'이라 합니다)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제4조 (특약의 내용)

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'다자녀가구 보험료할인'을 적용합니다.

- 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상계약에서 정한 할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대상계약 주계약 영업보험료 또는 주계약 기본보험료부터 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'다자녀가구 보험료할인'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
- ② 회사는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할인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- (1) 주계약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약환급금(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)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약정한 계약(다만,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
: 「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'다자녀가구 보험료할인' 할인율」 × 「대상계약에서 정한 할인 요건을 충족한 이후 보험료 할인 신청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」
다만, 할인액의 최대한도는 월납의 경우 「주계약 기본보험료」 × 「보험료 납입기간(연)」 × 12 × 「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'다자녀가구 보험료할인' 할인율」로 하고, 일시납의 경우 「주계약 기본보험료」 × 「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'다자녀가구 보험료할인' 할인율」로 합니다.

- (2) 그 외 계약

: 보험료 할인 신청 당시 「대상계약 주계약 영업보험료 또는 주계약 기본보험료」 × 「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'다자녀가구 보험료할인' 할인율」 × 「대상계약에서 정한 할인 요건을 충족한 이후 보험료 할인 신청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 납입횟수」

- ③ 기타 할인대상 보험료, 신청시 구비서류 등은 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3관 기타사항

제5조 (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)

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